

#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 시 정 요 구

제 목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터널관리소 과다 설계

기 관 명 충청남도

내 용

충청남도(충청남도○○○○사업소)는 2013. 12. 27. ○○토건(주) 대표이사 ○○○와 공사계약 체결(14,638,855천원, 기간 2013. 12. 27. ~ 2019. 2. 22.)하여 ‘○○~○○간 지방도 2차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5. 3. 17. (주)○○엔지니어링(대표 ○○○)외 1개사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 체결(1,849,400천원, 기간 2015. 3. 18 ~ 2019. 3. 26)하여 ‘○○~○○간 지방도 2차로 확포장공사 책임건설사업관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부당감액 또는 과다하게 증액하여 산정되지 않게 공사 감독공무원, 공사관리관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 하여금 공사시행 단계에서 현장 여건에 맞는 공법 변경 검토와 설계도면에 의한 시공 확인 등으로 예산 절감이 가능하도록 설계 변경 등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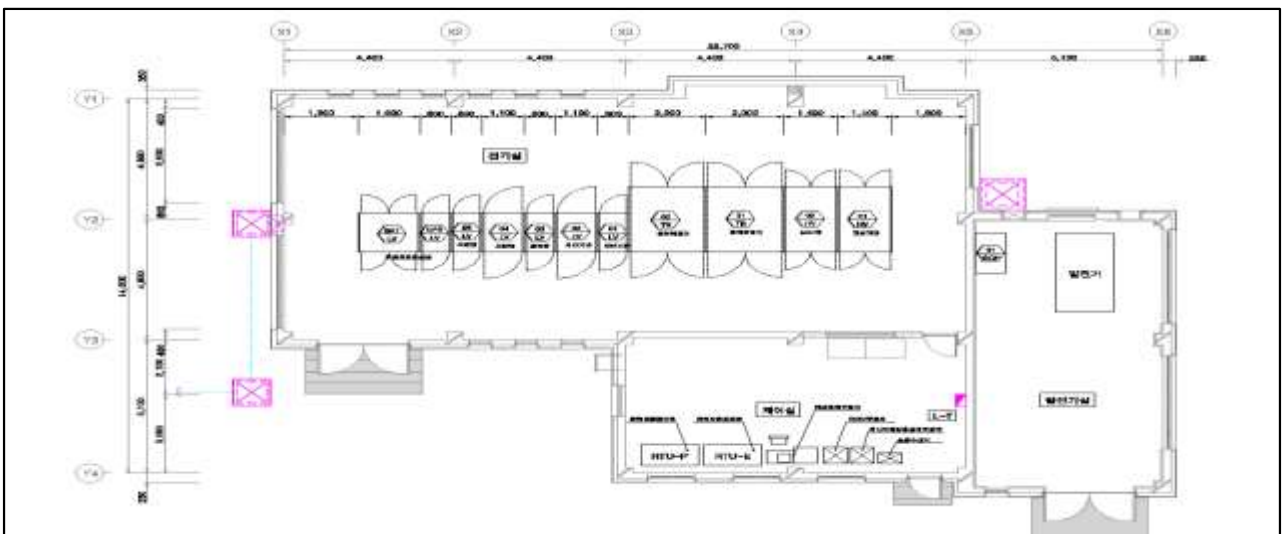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7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해당 공

사의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등 해당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사유서, 설계변경도면 및 공사비 증감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되어 있다.

위 관서에서는 동 사업에 있어 부여군 ○○면 ○○리에서 ○○면 ○○리를 연결하는 ‘○○터널’을 계획하였으며, 아래 [도면]과 같이 터널관리소를 총 면적 263.26㎡로 설치하도록 계획하였다.

[도면] 터널관리소 배치평면도



※ 자료근거 : 충청남도○○○○사업소 제출자료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04, 국토해양부)」 제8장 관리시스템 설치지침에 따르면 관리소는 연장기준 등급이 3등급인 터널 중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터널에 설치함에 있어 아래 [표1]과 같이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터널 연장기준 3등급인 ‘○○터널’의 관리소를 계획하면서 위의 지침에 규정한 건축면적(기계환기 40평내외)을 초과하여 263.26㎡

(약 80평)으로 과다하게 설치를 계획함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총 170,530천 원 상당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다.

[표1] 관리소, 관리사무소, 통합관리센터 설치 기준

| 구분   | 관리소                                                                                                           | 관리사무소                                                                                     | 통합관리센터                                                                                                             |
|------|---------------------------------------------------------------------------------------------------------------|-------------------------------------------------------------------------------------------|--------------------------------------------------------------------------------------------------------------------|
| 터널등급 | 연장기준 3등급                                                                                                      | 위험도지수기준 2등급이상                                                                             | -                                                                                                                  |
| 개요   | 무인관리를 목적으로 연장등급기준 3등급 터널의 방재시설 및 환기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전제어를 위한 최소한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전기실, 변전실, 비상발전기실, 중앙제어실 등의 공간을 갖춘다. | 상주관리자에 의해서 상시 터널 내 상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변 관리소의 상황파악을 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로 운영될 수 있다. | 주변 관리소나 관리사무소의 통합운영을 목적으로 터널 내 방재 시설 및 환기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위한 인원이 상주하는 사무소이며, 별도의 통합관리소 설치와 관리사무소에 통합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
| 건물규모 | 자연환기 : 옥외형<br>기계환기 : 지상1층                                                                                     | 지하1층, 지상1층                                                                                | 별도 : 지하1층, 지상1층<br>통합 : 지하1층, 지상1층                                                                                 |
| 건축면적 | 자연환기 : 30평 내외<br>기계환기 : 40평 내외                                                                                | 180평 내외                                                                                   | 별도 : 180평 내외<br>통합 : 200평 내외                                                                                       |

※ 자료근거 :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4. 국토해양부)

[표 2] 터널관리소 면적 변경에 따른 공사비 산정

| 공 종       | 단위 | 수 량 |    |    | 금 액     |         |          | 비고                 |
|-----------|----|-----|----|----|---------|---------|----------|--------------------|
|           |    | 당초  | 변경 | 증감 | 당 초     | 변경      | 증감       |                    |
| 총공사비      |    |     |    |    | 400,700 | 230,183 | -170,517 | VAT 포함             |
| 1.건축공사비   | 식  | 1   | 1  | 1  | 339,947 | 185,951 | -153,996 | 면적대비 추정치 (감 54.7%) |
| 2.건축관급자재  | 식  | 1   | 1  | 1  | 60,753  | 33,232  | -27,521  | 면적대비 추정치 (감 54.7%) |
| 3.건축변경설계비 | 식  | 0   | 1  | 1  | 0       | 11,000  | 11,000   | 예상 추정치             |

※ 자료근거 : 충청남도○○○○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이와 같이 위 관서에서는 터널관리소를 과다하게 계획함에 따라 시공 전 단계에서 합리적인 시공이 되도록 설계변경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감사일 현재(2017. 11.)까지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충청남도지사는**

**[시정]** 설계 내역서에 과다하게 계상된 터널관리소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적정 규모로 건축 계획을 변경하고, 차액 공사비 170,530,000원 상당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